

#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## ■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|         |  |
|---------|--|
| 서류제출 기한 | 2024년 3월 23일(토) ~ 3월 28일(목) 16시 도착분까지 (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)   |
| 제출 방법   | 건본주택 방문 접수   |
| 건본주택 위치 |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450-1 (대표번호 : 042-531-1008)  |
| 유의사항    | ·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건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>·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|

## 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출 서류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유형 |     | 해당서류                  | 발급기준        |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  | 해당자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
| 공통<br>서류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 | 본인          | 당사 건본주택 비치 -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 시(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, 입주권 전매를 포함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       | 본인          |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분)(본인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)(외국인 : 서명인증서)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신분증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 등<br>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          | 본인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          | 본인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         | 본인          |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)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출입국사실증명원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| [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,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]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          | 배우자         |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랍니다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         | 직계존속        |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(단신부임)   | 본인          | [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상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br>- 국내기업 ·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<br>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출입국사실증명원(단신부임)        | 세대원         | [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국내 거주를 증명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복무확인서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|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기타지역 청약 시 복무기간 확인   |
| 다자녀<br>특별공급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          | 피부양 직계존속    |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          | 자녀          |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         | 배우자/자녀      |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재혼·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     | 본인 또는 배우자   |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  | 입양의 경우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   | 본인 또는 배우자   |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한부모가족증명서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| 여성가족부의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| 본인/자녀       | 본인 :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.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<br>자녀 : 만 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.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 |
| 제3자<br>대리인<br>신청 시<br>추가사항 |      | ○   | 위임장                   | 본인<br>(청약자) | - 건본주택 비치(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       | 본인<br>(청약자) | * 본인(청약자) 외 모두 제3자로 간주(대리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)(외국인 : 서명인증서)<br>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분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| 대리인 신분증               | 대리인        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 등<br>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|

- \*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(2024.02.29(목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.
- \*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\*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\*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